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4,484,420	16,034,533
일반회계	483,650,583	14,509,517
특별회계	50,833,837	1,525,015
공기업특별회계	36,146,145	1,084,38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525,966	585,77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620,179	498,605
기타특별회계	14,687,692	440,631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954,055	58,622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9,799,265	293,978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857,319	55,720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701,905	21,05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75,148	11,25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58,90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